

##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2019. 6. 25 조례 제24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광명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

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공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년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성 보고서 공표)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2.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과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환경 분야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0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및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

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외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연구의 의뢰) 시장은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

제22조(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일부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